

2023년 영천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“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”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영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활력 고취를 위해 영천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『청년창업 및 이전기업 지원사업』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3년 3월

(재)경북테크노파크 원장

I 사업개요(요약)

- 가. 사업목적 : 영천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
- 나. 지원규모 : 3개 분야 총 16개 사 내외
- 다. 협약기간 : 협약체결 ~ 2023. 11. 30.
- 라. 모집정원 및 자격요건 : 영천시 금호읍 주소이전 및 유지 3년

구분	모집 정원	자격요건	
		대상	세부내용
■ 청년창업	12	영천시 외 타 지역 청년 (만19~45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예비창업자- 7년 이내의 창업기업
■ 이전기업	2	영천시 외 타 지역 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제조업
■ 스케일업	2	영천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제조업

II

지원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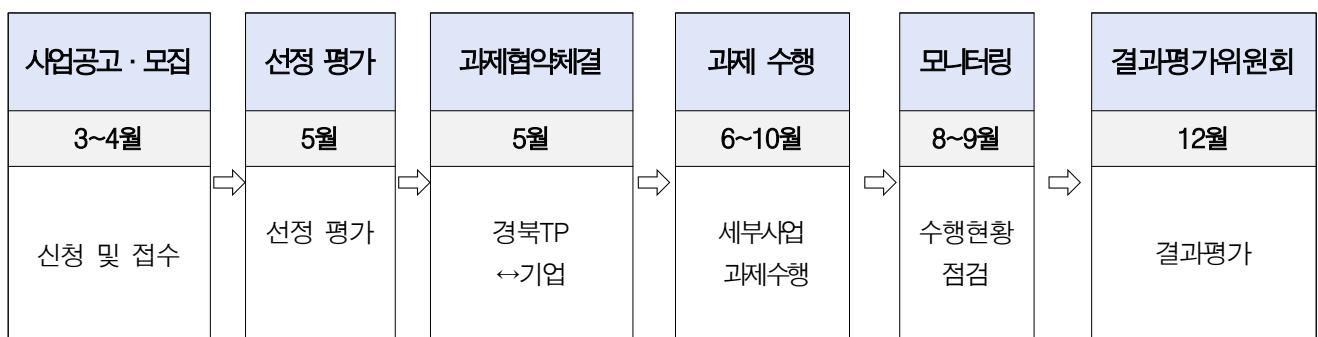
가. 지원금 및 지원내용

* 단위 : 천원

구분	세부내용		최대 지원금	모집 건수
■ 청년창업	사업화 자금	□ 창업 인프라 : 상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, 제품개발 장비 임대, 홍보 등 지원	70,000 (1차년 50,000 + 2차년 10,000 + 3차년 10,000)	12건
		□ 특허 출원 · 등록 : 개발 기술(제품)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출원 및 등록비 지원		
		□ 시제품제작 :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제품설계비, 소량 양산비 지원		
■ 이전기업	전문가 컨설팅	□ 전문가 컨설팅 : 창업 · 경영 전문가, 선배 청년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1:1 매칭하여 창업 · 경영 · 기술 등 전 분야 지원(10회 이상)	2,000	12건
	R&D	□ 연구개발 : 시제품 개발, 인증, 특허 출원 및 등록, 마케팅 등의 연구개발비 지원	200,000	2건
■ 스케일업	정착 자금	□ 공장, 사무실, 설비 등의 임대료 지원		
	사업화 자금	□ 아이디어 단계의 신제품개발 또는 제품고도화, 사업다각화를 위한 연구개발, 설비나 제조공장 임대 등 비용 지원	200,000	2건

※ 협약 후 3개월 이내 영천시 '금호읍'으로 주소이전 및 3년 유지

나. 추진일정



III

지원대상

가. 청년창업

- 1) 타 지역 1년 이상 거주 청년(만 19~45세)의 예비 창업자(선정 후 사업자 제출)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
- 2)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참여자 선정 후 사업자등록을 폐업 조건으로 참여 가능
 - * 단, 기존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는 경우 참여 불가
 - * 사업자 사실 증명원 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 등 관련 서류 제출
- 3) 청년창업 모집 분야

분 야	대 상 업 종
지식창업	지식 콘텐츠, 마케팅홍보 디자인, 문화서비스업, 통신판매업, 아이디어 창업 등
6차산업 연계 창업	6차산업 관련 사업 분야와 연계된 서비스업, 제조업, 판매업
일반창업	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 창업 등
기술창업	기계, 재료, 전기.전자, 정보통신, 화공, 섬유, 생명, 식품, 환경, 신재생에너지, 지역 공예품 및 특산물 육성 등

나. 이전기업 : 타 지역 1년 이상 운영 중인 제조 기업

다. 스케일업 : 영천시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영천 소재의 제조 기업

※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함

다. 사전지원 제외 대상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(기업)

- 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 · 접수 마감일 기준) >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 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 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 4. 신용보증기금 · 기술보증기금의 ‘재도전 · 재창업 재기지원보증’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· 신용회복위원회의 ‘재창업 자금지원’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(기업)

- 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 · 접수 마감일 기준) >
1.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 2. 국세 ·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

④ 중소벤처기업부 (舊 중기청)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, 타 중앙정부 · 공공기관 ·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※ 중단 (중단처분 · 중도포기자) 포함 특히, 의성군 안계면, 영덕군 영해면 등 이웃사촌마을사업 기지원받은 청년, 기업, 단체 등 신청 불가. 적발시 보조금 및 이자 환수

⑤ 타 중앙정부 · 공공기관 · 지자체의 창업 관련 지원사업*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(기업)

* 중단 (중단처분 · 중도포기자) 포함

*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확보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
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(기업)

⑦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(기업)

⑧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 (기업)

⑨ 기타 경상북도 도지사 또는 영천시 시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(기업)

⑩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 또는 부적정” (기업)

⑪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 신청자

IV

세부지원내용

가. 청년창업

1) 지원내용

: 사업화 자금으로 편성된 창업 인프라, 특히 출원 및 등록, 시제품 제작 중 1개 이상의 프로그램 및 전문가를 1:1 매칭하여 창업 및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

2) 지원 대상

: 타 지역 1년 이상 거주 청년(만 19~45세)의 예비 창업자(선정 후 사업자 제출)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

3) 지원금 : 당해 최대 52,000천원(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 기업부담)

※당해연도 사업 결과평가 후 2차년 10,000천원 + 3차년 10,000천원 추가 지원(**기업당 최대 72,000천원**)

※부가세는 사업비로 사용 불가

나. 이전기업

1) 지원내용

: 이전을 위한 공장, 사무실 등의 공간 임대료 및 장비 설비 임차비를 지원하며, 그 외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재료, 시험인증, 특히 등록 및 출원비 등의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

2) 지원 대상

: 타 지역 1년 이상 운영 중인 제조 기업

3) 지원금 : 최대 200,000천원(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 기업부담)

※부가세는 사업비로 사용 불가

다. 스케일업

1) 지원내용

: 영천지역 내 기업으로 제조공장 확장, 설립, 제품고도화 등을 통한 스케일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연구개발, 제조공장 및 설비 임대료 지원

2) 지원 대상

: 영천시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영천에 있는 제조 기업

3) 지원금 : 최대 200,000천원(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 기업 부담)

※부가세는 사업비로 사용 불가

V

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가. (1차) 사전 검토

- 1) (사전검토) 既개발 및 既지원 중복성 여부
- 2) 사전지원 제외 대상 여부
- 3) (현장실태조사) 과제 신청 기업의 신청 자격, 사업추진 조직의 운영체계, 기술성 및 사업성, 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

나. (2차) 선정평가

- 1) 사전검토(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) 결과,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,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, 지원금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과제선정
※대면 평가는 사업계획서 요약본으로 진행
- 2) 종합평가에 따른 우선순위,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을 진행하며,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“탈락”, 70점 이상인 기업들 중 최상위 득점 순서대로 지원 건수만큼 “최종선정” 함
- 3) “최종선정” 기업이 협약을 하고 1개월 이내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(과제 포기, 자격 박탈)이 발생시, 70점 이상인 과제 중 차상위 득점을 한 기업과 재협약을 진행하여 사업을 지속함

다. 기타 준비 사항

- 1) 현장실태조사
 - 가) 조사 대상 : 지원 신청 중소기업
 - 나) 제출 기한 : 현장 실태조사 방문 시 현장 제출
- 2) 선정 평가위원회
 - 가) 제출 기한 : 평가 1일 전 메일 제출
 - 나) 제출 서류 : 대면 평가 자료(자유 양식)
- 3) 선정된 기업은 협약식 및 워크숍 필수 참석

라. 최종 결과평가

- 1) (평가위원회 평가) 수행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최종결과를 판정함
※ 평가등급 : 성공, 보완, 실패, 최종 평가위원회 일정은 향후 공지
- 2) 평가등급에 따라 지원비 “인정” 또는 “환수” (전액 or 일부)
- 3) (평가위원회 재평가)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“평가보류”로 판단된 과제는 평가 결과 통보 후 3주 이내 수행 결과보고서 보완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

VI 기업모니터링 및 사후관리

가. 모니터링(진도점검)

- 1) 지원사업 수행내용 및 기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면담 또는 기업방문을 실시할 수 있음
- 2)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관기관(기업)에 대한 면담 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실시함
- 3)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, 모니터링 시 기술·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, 주관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

나. 지원사업 결과물의 사후관리

- 1) (지원사업 결과물의 귀속) 지원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(기업) 소유로 함
- 2) (사후관리) 관리기관은 최종 평가 결과 통보연도부터 3년간 지원 결과로 인한 성과(매출, 수출, 고용 등)를 분석하여 사업 총괄 또는 관리기관에서 보고함
- 3) 기술료 : 기술료 면제

가. 사업비 구성 : 사업비 구성은 지원금,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기업부담금(현금) 포함한 금액으로 함

※ 지원금은 전체사업비의 90% 이내에서 지원,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%(현금) 이상으로 함

나. 협약의 체결 및 수행 결과 보고에 따른 지원금 지급

1) (협약 준비) 지원기업이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, 수정 사업계획서를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출

제출서류

- ① 사업계획서(최종본)
- ② 사업비 청구서
- ③ 주관기관 현물출자확약서
- ④ 사업비 통장사본
- ⑤ 법인인감증명서(해당시)
- ⑥ 선금보증보험((구)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) : 협약일로부터 2주 이내 별도 제출

2) (협약 체결) 지원기업은 민간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 이후 협약서류 일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지원기업 간 협약을 체결함

※ 선정된 기업은 협약식 및 워크숍 필수 참석

3) (사업비 지급 및 사용) 협약체결 후 사업비 선지급하며, 사업 기간 내 집행 해야 함(현금인출 불가)

4) (수행결과보고서 제출) 지원기업은 협약 기간 종료 1일 전까지 수행 결과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관리기관에서 제출함

※경북 스마트 기업정보 시스템 (<https://smart.gbtp.or.kr/login>) 기업분석보고서 제출 (필수)

VIII

접수 및 문의처

가. 접수기간 : 2023. 3. 15.(수) ~ 2023. 4. 19.(수), 17:00시 까지

나. 접수방법 : 이메일 제출(한컴오피스, PDF)

접수처	gmj@gbtp.or.kr
문의처	경북테크노파크 지역특화사업추진단 그린기업지원센터 구민정 전임연구원(☎054-339-3352)

다. 제출서류

1) 청년창업

구분	제출서류 목록	제출부수
필수	① (서식1-1) 지원사업 상세계획서(한컴오피스)	1부
	② (서식2) 개인(기업)정보 수집 · 활용 동의서	1부
	③ (서식3)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	1부
	④ (서식4)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	1부
	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	1부
	⑥ 사업자등록증	1부
	⑦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(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발급)	1부
해당시	⑧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	1부
	⑨ 최근 3년(20~22년) 재무제표(※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제출)	1부
	⑩ 공장등록증	1부
	⑪ 회사소개서, 제품 홍보자료 등	1부
	⑫ 지식재산권, 인증관련 : 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, ISO등	1부

2) 이전기업 및 스케일업

구분	제출서류 목록	제출부수
필수	① (서식1-2) 사업계획서(한컴 오피스)	1부
	② (서식2)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	1부
	③ (서식3)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약서	1부
	④ (서식4)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	1부
	⑤ 사업자등록증	1부
	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	1부
	⑦ 최근 3년(20~22년) 재무제표(※일반과세자 또는 결산 미확정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)	1부
	⑧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	1부
	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1부
	⑩ (서식5) 신규인력 채용 예정 확인서	1부
	⑪ (서식6) 연구용역 계획서	1부
	⑫ 공장등록증	1부
	⑬ 회사소개서, 제품 홍보자료 등	1부
	⑭ 지식재산권, 인증 관련 : 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, ISO등	1부

※ 참고사항

- 가. 사업에 참여하는 자 (주관기업,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 등)'은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나.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
- 다. [사업비=지원금] 사업비 구성은 보조금,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·현물을 포함한 금액
 -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
 -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% 이상을 현금으로 계상, 현물은 계상비율 제한 없음
 -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현물계상, 신규인력에 한해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
 -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
 -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
 - 협약체결 → 민간부담금 입금(기업) → 사업비(영천시 보조금) 선지급(경북TP→기업)
- 라. 사업비유용,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
- 마. [모니터링 및 진도점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
- 바. [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]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·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(기업)의 소유로 함
- 사. [사후관리] 관리기관은 최종평가결과 통보연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 결과로 인한 성과(매출, 수출, 고용 등)를 분석하여 총괄기관에 보고